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79
----------	------

2021년 4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1일, 박순규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4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순규 위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공무원직 전환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정비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함.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1991.5.25일 제정(서울특별시조례 제2755호)되었으나 2012년부터 市 소속 환경미화원의 공무원 전환으로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1991년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하려는 취지였으나,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에 따라 2013년까지 사업소별로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원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면서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현행 조례에 적용받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조례 존속 필요성은 상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조례 폐지의 요건과 정당성은 갖추어졌다 사료됨.
-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으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여를 지원받은 환경미화원 중 총 2명이 현재까지 변제 중에 있고, 이들의 학자금 대여 상황이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완료될 예정인 것을 반영한 것임.

[표 1]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상환 현황

구 분	성 명	입사일	퇴직일	대여총액	2021.1. 기준 잔여액	상환예정일
1	○○○	1995-08-10	2027년	3,460,000원	1,009,280원	2022년 3월
2	○○○	2004-04-01	2027년	13,370,000원	3,899,640원	2022년 3월

- 참고로, 서울시 역시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졌고, 상환이 완료되기 전 변제 중인 2명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7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1명)  
찬 성 자 :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공무원 전환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정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